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5,351,821	16,660,555
일반회계	536,635,298	16,099,059
특별회계	18,716,523	561,496
기타특별회계	18,716,523	561,49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7,144	10,414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9,596	2,688
수질개선 특별회계	237,635	7,12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20,982	24,62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20,513	9,615
주차장 특별회계	2,616,053	78,482
기반시설 특별회계	274,008	8,2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4,010,592	420,31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94,15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